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1호 2019. 9.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4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디에스종합건설(주) (대표자 : 임홍남)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4블록
 - 나. 대지면적 : 31,363㎡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9,559.1088㎡ (지하 5층, 지상 4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1,0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120호, 판매시설 8개동
 - 마. 사 업 비 : 612,00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9. 1. ~ 2023. 2. 28.

5. 변경사항

가. 연면적 변경(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조체 추가 및 내부구조 변경 등)

- 기존 연면적 : 198,631.0028m²

- 변경 연면적 : 199,559.1088m²

나. 단지 배치 일부 조정(주민운동시설 위치 변경, 문주 추가 등)

다. 판매시설 입면 변경

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백석동 한들구역 1블록 1로트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하나자산신탁 (대표자 : 이창희)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1블록 1로트
 - 나. 대지면적 : 103,06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49,981.0366㎡ (지하 2층, 지상 40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2,379세대
 - 마. 사 업 비 : 1,026,320,835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1. ~ 2022. 12. 31.
5. 변경사항
 - 가. 연면적 변경(근린생활시설3, 티카페, 새싹정류장 및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신설,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등)

- 기존 : 350,490.9541m²

- 변경 : 349,981.0366m²

나. 단위세대 타입 변경(84타입 84A, 84B, 84C로 분할, 234타입 241타입으로 변경)

다. 배치 변경(경비실 위치 이동,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신설 등)

라. 지하1층 주차장 구조형식 변경(무량판 구조 -> 라멘구조)에 따른 레벨 변경

마. 주차대수 변경(3,006대 -> 3,015대)

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백석동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하나자산신탁 (대표자 : 이창희)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 나. 대지면적 : 107,91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64,068.1707㎡ (지하 2층, 지상 40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2개동 2,426세대
 - 마. 사 업 비 : 1,075,976,475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1. ~ 2022. 12. 31.
5. 변경사항
 - 가. 연면적 변경(근린생활시설4, 근린생활시설5, 티카페, 새싹정류장

및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신설, 유치원 삭제,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등)

- 기존 : 364,964.5292m²

- 변경 : 364,068.1707m²

나. 단위세대 타입 변경(84타입 84A, 84B, 84C로 분할, 234타입 241타입으로 변경)

다. 배치 변경(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신설 등)

라. 지하1층 주차장 구조형식 변경(무량판 구조 -> 라멘구조)에 따른 레벨 변경

마. 주차대수 변경(3,104대 -> 3,096대)

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7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주)우심산업개발 (대표자 : 강민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7블록
 - 나. 대지면적 : 43,831㎡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8,211.408㎡ (지하 3층, 지상 47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1,4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100호,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마. 사 업 비 : 790,234,06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1. ~ 2023. 5. 31.

5. 변경사항

가. 사업비 변경

- 기존 : 691,703,868천원
- 변경 : 790,234,062천원

나. 사업기간 변경

- 기존 : 2019. 9. 1. ~ 2023. 5. 30.
- 변경 : 2019. 10. 1. ~ 2023. 5. 31.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이훈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 나. 대지면적 : 45,73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3,911.6847㎡ (지하2층, 지상21~28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936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
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59,00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10. ~ 2021. 08. 31.
5. 변경사항
 - 가. 실외기실 그릴 창호 크기 변경(84형 폭 900mm → 1,070mm)
 - 나. 사업주체 대표자 변경(박성표 → 이훈복)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로 명문화하여 선수단의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우수성적을 거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치 신설(코치 임무, 자격, 복무 및 훈련, 임용서류, 급여 등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2019.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032-560-4133,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로 명문화하여 선수단의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우수성적을 거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치 신설(코치 임무, 자격, 복무 및 훈련, 임용서류, 급여 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참조”

라. 관계 법령 발췌 : “없 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감독과 선수로 구성하며, 감독과”를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목”을 “종목 “1급 이상 경기 지도자” 중에서, 코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수”를 “코치, 선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8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9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0조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11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2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운동경기부는 <u>감독과 선수로</u> 구성하며, <u>감독과 선수의 정원</u>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감독과 코치</u> (이하 “지도자”라 한다), <u>선수로</u> 구성하며 <u>지도자</u>, ----- --.</p>
<p>제3조(임용권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감독 및 선수의 임명·징계·면직</u>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p> <p>② <u>감독 및 선수의 임명·징계·면직</u>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임용권자) ① ----- ----- ----- <u>지도자</u>, ----- ----- -----.</p> <p>② <u>지도자</u>, ----- ----- ----- -----.</p>
<p>제4조(임용자격) ① <u>감독 및 선수</u>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②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u>종목</u> “2급 이상 경기 지도자” 중에서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p>	<p>제4조(임용자격) ① <u>지도자</u>, ----- ----- -----.</p> <p>② ----- ----- <u>종목</u> “1급 이상 경기 지도자” 중에서, <u>코치는</u> ----- -----.</p>

③ 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로 등록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5조(복무 및 훈련) ① 감독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무)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③ ----- 지도자, -----

-----.

제5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 -----

-----.

② 코치, 선수-----

-----.

제6조(의무) 지도자, -----

-----.

1. ----- 지도자, -----

-----.

2. ----- 지도자, -----

-----.

3. ----- 지도자, -----

-----.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겸직금지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5. (생략)

제8조(보수)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실비보상)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참가·전지훈련·우수선수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 구청장은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격려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감독 및 선수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

-----.
-----.

4. ----- 지도자, -----

--.

5. (현행과 같음)

제8조(보수) 지도자, -----

-----.

제9조(실비보상) 지도자, -----

-----.

제10조(보상금 등) -----

----- 지도자 -----

-----.

제11조(퇴직금) 지도자, -----

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신분 및 권익보장)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지원)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 ①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제3조에 따른 감독 및 선수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 및 선수의 신규임용
2. 감독 및 선수의 재계약, 등급 조정, 징계의결

-----.

제12조(신분 및 권익보장) -----
-- 지도자, -----

-----.

제13조(의료지원) ----- 지도자,

-----.

제14조(심의위원회) ① -----

----- 지도자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지도자, -----
2. 지도자, -----

<p>3. · 4. (생략)</p> <p>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u>감독</u>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감독</u> 및 선수가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p> <p>② · ③ (생략)</p> <p>④ 징계로 해임된 <u>감독</u> 및 선수는 재위촉할 수 없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15조(징계) ① ----- <u>지도자</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도자</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지도자</u>, ----- -----.</p>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로 명문화하여 선수단의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우수성적을 거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치 1명 신설 [규칙안 2조 ~ 19조, 별표 1, 별표 4]

- 코치의 임무, 자격, 복무 및 훈련, 임용서류, 급여 등 규정

나. 면직규정 변경 (규칙안 제6조제1항제7호)

(지도자의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성적)

- 전국체육대회 3년 간 1회 이상

⇒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 간 1회 이상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2019.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032-560-4133,
FAX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로 명문화하여 선수단의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우수성적을 거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치 1명 신설 [규칙안 2조 ~ 19조, 별표 1, 별표 4]

- 코치의 임무, 자격, 복무 및 훈련, 임용서류, 급여 등 규정

나. 면직규정 변경 (규칙안 제6조제1항제7호)

(지도자의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성적)

- 전국체육대회 3년 간 1회 이상

⇒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 간 1회 이상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예산팀 협의”

라. 관계 법령 발췌 :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수”를 “코치 1명, 선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독은”을 각각 “지도자는”으로, 같은 항 중 “감독에게 부득”을 “지도자가 부득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코치는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3.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 ② 코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3.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4. 최종학력증명서

5. 건강진단서

제5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독은 운동경기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을 “지도자는 운동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감독이”를 “지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감독과”를 “지도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코치 - 50세

제16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자 점수 산정 기준표 (제4조제5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36점	33점	30점	개인 및 단체
아시안게임	특급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21점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3점	11점	8점	6점	4점	
심의위원회 배점	1점 ~ 40점						

1. 지도자 점수는 선수들의(전직이나 현직에서 지도했던 선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의 60퍼센트를 적용한 점수와 심의위원이 배정한 평균 점수를 더한다.
2. 감독 점수산정을 위한 선수들의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감독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임용전 최근 1년간 지도했던 선수의 경기실적을 산정한 시준표를 따른다. 점수
4. 코치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선수은퇴 전 1년간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한 기준표를 따른다. 기준

[별표 4]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직책	등급	연봉액		비고
		점수	보수액	
감독	1	500점 이상	60,000	
	2	400점 이상 ~ 500점 미만	58,000	
	3	300점 이상 ~ 400점 미만	56,000	
	4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53,000	
	5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50,000	
	6	90점 이상 ~ 100점 미만	47,000	
	7	80점 이상 ~ 90점 미만	44,000	
	8	70점 이상 ~ 80점 미만	39,000	
	9	60점 이상 ~ 70점 미만	34,000	
코치	1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50,000	
	2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45,000	
	3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40,000	
	4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38,000	
	5	90점 이상 ~ 100점 미만	35,000	
선수	1	○ 올림픽대회(4년) 3위 이내, 아시안게임(4년) 1위 입상 ○ 배점 합계 700점 이상	60,000	
	2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아시안게임 2, 3위 입상 ○ 배점 합계 600점 이상	58,000~ 56,000	
	3	○ 세계선수권대회 2,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입상 ○ 배점 합계 500점 이상	56,000~ 54,000	
	4	○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 배점 합계 400점 이상	54,000~ 48,000	
	5	○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 ○ 국가대표 선발 ○ 배점 합계 300점 이상	48,000~ 44,000	
	6	○ 배점 합계 200점 이상	4,400~ 4,000	
	7	○ 배점 합계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40,000~ 30,000	
	8	○ 배점 합계 40점 이상 ~ 100점 미만	30,000~ 26,000	
	9	○ 배점 합계 40점 이하	24,000	

1. 별표 1과 2에 의한 점수 적용
2. 감독 9등급 미만, 코치 5등급 미만, 선수 9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p>	<p>제2조(구성) ----- ----- ----- <u>코치</u> 1명, 선수 -----.</p>
<p>제3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으로 두고 <u>감독 및 선수</u>는 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u>감독</u>은 선수 발굴, 추천,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p> <p>③ <u>감독</u>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u>감독에게</u>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지휘·감독) ① ----- ----- ----- <u>감독 및 코치</u> (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p> <p>② <u>지도자</u>는 ----- ----- -----.</p> <p>③ <u>지도자</u>는 ----- <u>지도자가</u> 부득이----- ----- -----.</p>
<p><신 설></p> <p>제4조(제출서류 및 임용) ① 감독이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p>	<p>④ <u>코치</u>는 <u>감독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제출서류 및 임용) ① -- -----</p>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3. 경기지도자자격증
- 4. ~ 7.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임용이 결정된 감독 및 선수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 4. (생략)

④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7항에 따라 감독의 심의는 별표 1을, 선수의 심의는 별표 2를 적용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 1.·2. (현행과 같음)
- 3.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 4. ~ 7. (현행과 같음)

② 코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력서
-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 3.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 4. 최종학력증명서
- 5. 건강진단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지도자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지도자 -----

⑥ -----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독 및 선수의 임용 전에 결격사유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⑥ 계약 및 재계약 기간을 감독은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선수의 최소 계약 유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⑦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생략)

제6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 지도자

-----.

⑦ ----- 지도자
도자는 -----

-----.
-----.

⑧ ----- 지도자 -----

-----.

제5조(징계) ① ----- 지도자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면직) ① -----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생략)
-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3. ~ 6. (생략)
- 7. 감독은 운동경기부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 8.·9. (생략)

② (생략)

제7조(복무)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③ 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

- 1. (현행과 같음)
- 2. 지도자 -----

- 3. ~ 6. (현행과 같음)
- 7. 지도자는 운동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

-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복무) ① 지도자 -----

지도자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자 -----

-----.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생략)

⑥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⑦ 감독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9조(보수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1년 단위로 다음

④ 지도자 -----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도자 -----

-----.

⑦ 지도자 -----

-----.

제9조(보수 등) ① 지도자 -----

-----.

② 지도자 -----

-----.

③ -----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감독과 선수의 연봉은 별표 4와 같다.

2.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으로 4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때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전비용 등) ① 감독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감독은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加算)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등) ① 감독 및

-----.

1. 지도자와 -----
-----.

2. 지도자 -----

제10조(출전비용 등) ① 지도자

-----.

② -----

----- 지도자는 -----

-----.

-----.

제12조(보상금 등) ① 지도자 -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선전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운동경기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③ 입상 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 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8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성과금 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9개정 2016.12.28.)

제14조(신분보장) ① 감독 및 선

-----.

② -----

지도자-----

-----.

③ -----

-. ----- 지도자-----

제14조(신분보장) ① 지도자 --

수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징계처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 및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제16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감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료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

② 지도자 -----
----- . ----- 지도자

-----.

1. (현행과 같음)

2. 코치 - 50세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6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지도자 -----

-----.

② 지도자는 -----

-----.

제19조(의료보상) ① 지도자 --

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9 - 1420 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77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5호선)
 - 명칭 :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2019.5.20.~ 2020.7.31.	인천 서구 석남동 650-77번지 일원	L= 168m B= 10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사업의 근거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인천직할시 고시 제1406호(1988.12.2.)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97호(2019.5.2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5.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19. 9. 2. ~ 2019. 9. 19. (17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560-4482)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9. 10~11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723.9	1,723.9					
1	석남동	650-77	잡	1,723.9	78.90	황**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번길 **, ** 동 **호(송도동, 송도아메리칸 타운아파트)			
2					239.41	황**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신 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					97.15	강**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4					59.50	대**업 주식회사	인천 서구 석남동 **-**	송**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 **동**호 (죽전동, 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5					31.40	한**	인천시 부평구 동암산로 **, **동 **호(십정동, 약산신동아아파트)			
6					31.40	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 **동 **호(성북동,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7					48.58	허**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문지안길**번길 **	중소기업 은행	인천 계양구 용종로 2 계산프라자 계양지점	근저당권
7					76.70	허**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문지안길**번길 **	중소기업 은행	인천 계양구 용종로 2 계산프라자 계양지점	근저당권
8					160.46	황**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 동**호(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석남동	650-77	잡	1,723.9	48.57	강**	인천시 남동구 주안로 ** (간석동)	박**	인천 남동구 주안로 **(간석동)	배우자
								강**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A)	자녀
								강**	인천 남동구 주안로 **(간석동)	자녀
								강**	인천 동구 화도진로 **, **동 **호(화수동, 영풍아파트)	자녀
10				515.20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10				45.99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10				46.00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10				66.22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10				66.22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10				112.20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중소기업 은행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석암지점	근저당권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650-77	창고	천막+철제 4.8x17.5xH5.0	1동		허**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문지안길**번길 **			
2	석남동	650-77	담장	콘크리트+블록 H1.3xB0.3 (콘크리트기둥1)	15.0m		김**	서울 송파구 가락2동 **번지 쌍용아파트 **_**			
3	석남동	650-77	담장	콘크리트+블록 H1.3xB0.3 (콘크리트기둥2)	15.0m		김**	인천시 남동구 능호대로 **(고잔동)			
4	석남동	650-77	철문	철제 H1.8xL5.5	1		허**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문지안길**번길 **			
5	석남동	650-77	웬스	능형망 H1.8m	65.0m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6	석남동	650-77	웬스	PE망 H3.5m	65.0m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7	석남동	650-77	웬스	능형망 H1.8m	92.0m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8	석남동	650-77	철문	철제 H2.1xL6.0	1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9	석남동	650-77	철문	철제 H1.8xL4.0	1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10	석남동	650-77	흡연구역	판넬 W2.6, H2.4xH1.9	1EA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PE지붕 2.6x3.1	1EA						
				비닐 2.6x1.9	1EA						
			담장	콘크리트+블록 H=1.8mxB=0.3	28.0m						
11	석남동	650-77	휴게실	콘테이너박스 10.0x4.0, H2.6	1동		한**수 주식회사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 (주안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연임 기준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활기찬 편집위원회를 운영해 나가하고자 함

○전문기고 및 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분야를 확대하고,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구정소식지 제작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 편집위원회 연임 횟수 기준이 없어,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전 실비보상기준을 인상하여 전문기고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홍보미디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142, 팩스 032-560-2703)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연임 기준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활기찬 편집위원회를 운영해 나가하고자 함
- 전문기고 및 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분야를 확대하고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구정소식지 제작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애매한 표현을 지양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 12조)
-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 위원을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함(안 제16조)
- 편집위원회 연임 횟수 기준이 없어,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확한 표현인 어휘 순화하여 표기하고자 함(안 제22조의 2)

- 종전 실비보상기준을 인상하여 전문기고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안 제23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항상 비치”를 “비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2조의 2 제3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비보상내역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고료 등	비 고
전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1편당 100,000원 ·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 1매당 × 10,000원 - 만화, 만평 50,000원 	* 원고료 등은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 참여자 · 1편당 50,000원 상당 	
명예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당 50,000원 상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배부범위) ① ----- ---, <u>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 련인에게</u> 배부한다.</p> <p>② 각 <u>실·과·소·동</u>에서는 소식지 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u>항상 비치</u>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11조(배부범위) ① ----- ---, <u>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 설 등에</u> 배부한다.</p> <p>② -- <u>단·실·관·과·소·동</u>----- ----- <u>비치</u>-----.</p>
<p>제12조(배부방법) ① 각 <u>실·과·소 ·동</u>은 발간부서에서 직접 배부하 며, 구민에게는 통·반장이 직접 배 부한다.</p> <p>② (생 략)</p>	<p>제12조(배부방법) ① -- <u>단·실·관 ·과·소·동</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 -----임기로 한다. <단서 <u>신설</u>></p>	<p>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임기로 한다. <u>다만,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8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u>하되</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8조(임기) ----- -- <u>하되, 한 차례만</u> --. ----- ----- -----.</p>

<p>제22조 2(명예기자) ① ~ ② (생략)</p> <p>③ ----- ----- <u>해촉</u> -----.</p> <p>④ 명예기자의 자격조건, 역할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u>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2조 2(명예기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위촉 해제</u> -----.</p> <p>④ 삭제</p> <p>제2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u>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	---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4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폐관 및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등록(2019. 8. 1.)에 따라 위탁시설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을 타 수련시설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변경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중 종전의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의 폐관 및 가좌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개관)으로 개정 (별표1)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시간대 현실화 변경, 강의실 물품 사용료 감면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교육혁신과 전화 560-5892, 팩스 560-27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사용하는”을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를 “교육수강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영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는 그날”을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강사)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u>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u>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다만, 사용하는 날에 <u>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8조(사용료 등) ① ----- <u>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 교육수강료를 징수한다.</u></p> <p>② -----</p> <p>-----</p> <p>-----</p> <p>-----</p> <p>-----</p> <p>-----</p> <p>----- <u>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u></p> <p>제8조의2(강사) ① <u>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p> <p><u>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③ <u>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별지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12(가좌동)	2019.8.1. 등록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3(마전동)	

【별지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2,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공연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무대시설	공	바	톤	1회 1개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 젝 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수영장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4,000	38,000	1일 1회만 출입하는 기준금액임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3,000	28,000	
1일 이용	개 인	5,000	3,000	2,000	
	단 체	4,000	2,500	1,5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소속**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5,000원,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h2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2>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